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던 바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이라고 규정된 부분에 반지하, 지대가 낮은 지역 등 구체화된 예시를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제2호 및 「건축물의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에 해당하는 지역,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가 낮은 지역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돌아올 여름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